

의안번호	제768호
의결 연월일	년 월 일 (제 회)

충청북도 환경보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제출자	충청북도지사
제출연월일	2024년 11월 15일

법무혁신담당관 심사를 마칩

충청북도 환경보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768
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 : 2024년 11월 15일

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1. 제안사유

- 「환경보건법」 개정('25. 1. 1. 시행)으로 건강영향조사 청원 업무가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로 이관됨에 따라, 건강영향조사 청원과 관련된 조항을 삭제하고 충청북도환경보건위원회를 비상설화하기 위해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.
- 불필요한 조항 정비 및 조문 수정을 통해 간결화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충청북도환경보건계획 수립(안 제2조)
- 충청북도환경보건위원회 설치·운영 등(안 제3조~제6조)
- 역학조사 등에 관한 규정(안 제7조)
- 충청북도건강영향조사반 구성·운영(안 제8조)

3. 의안전문 : 붙임

4. 신·구조문 대비표 : 생략

5. 관계법령 발취 : 붙임

6. 비용추계서 : 붙임

충청북도 환경보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환경보건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충청북도 환경보건 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환경보건법」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, 환경오염과 유해화학물질 노출 등으로 인한 충청북도민의 건강피해를 예방·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충청북도환경보건계획의 수립) ① 충청북도지사(이하 “도지사”라 한다)는 「환경보건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6조의2에 따라 충청북도환경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충청북도환경보건계획(이하 “환경보건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하여야 한다.

② 도지사는 환경보건계획을 수립한 날부터 5년이 지나거나 환경부장관의 요청 등에 따라 환경보건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충청북도환경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보건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.

③ 도지사는 환경보건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미리 충청북도민(이하 “도민”이라 한다) 및 시장·군수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.

제3조(충청북도환경보건위원회 설치 및 기능) ① 도지사는 법 제10조의2에 따라 충청북도의 환경보건 증진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북도환경보건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구성·운영할 수 있다.

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제2조에 따른 환경보건계획의 수립과 변경
2. 충청북도의 환경보건 증진을 위한 시책
3. 그 밖에 충청북도의 환경보건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도지사가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

제4조(위원회 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장은 환경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1명을 호선한다.

③ 위원회 위원은 환경보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거나 임명한다.

1. 환경보건 전문가
2. 환경보건 관련 시민단체의 대표자
3. 환경보건 관련 산업계 종사자
4. 소속 공무원
5. 그 밖에 환경보건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
④ 위원회는 회의에 부치는 안건이 있을 때 구성하고, 안건에 대한 심의가 모두 끝나면 자동으로 해산한다.

⑤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「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에 따른다.

제5조(위원장의 직무 등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
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,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6조(위원회 운영)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.

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③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.

④ 위원장이 심의·조정 및 자문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및 공무원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

⑤ 위원회의 수당에 관한 사항은 「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」에 의한다.

제7조(역학조사 등) ① 도지사는 법 제15조에 따라 환경성질환의 발생 또는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가 우려되거나 의심되는 지역 주민 등 특정 인구집단에 대하여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.

② 도지사는 역학조사를 마친 때에는 그 결과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

게 알려야 한다.

③ 도지사는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관할 구역의 환경매체와 환경유해인자를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대책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.

제8조(충청북도건강영향조사반 구성·운영) ① 도지사는 법 제15조에 따라 충청북도건강영향조사반(이하 “건강영향조사반”이라 한다)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② 건강영향조사반은 도지사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.

1. 환경보건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
2. 환경보건, 인체독성, 환경매체 및 역학조사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
③ 건강영향조사반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.

제9조(행정적·재정적 지원) ① 도지사는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도민의 건강피해를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환경보건 관련 기관·단체 등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② 도지사는 환경보건 증진을 위해 조사·연구·교육을 실시하는 전문 기관·단체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1. 제7조에 따른 역학조사
2. 환경보건 증진을 위한 조사·연구 및 교육
3. 그 밖에 도지사가 환경보건 증진을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

사업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관련법령 발취

□ 환경보건법

제6조의2(지역환경보건계획의 수립) ①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(이하 “시·도지사”라 한다)는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제10조의2에 따른 지역환경보건위원회의 심의(지역환경보건위원회가 설치된 경우에만 해당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를 거쳐 종합계획에 따른 지역환경보건계획(이하 “지역계획”이라 한다)을 세워야 한다.

② 시·도지사는 지역계획을 세운 날부터 5년이 지나거나 환경부장관의 요청 등에 따라 지역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역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.

③ 시·도지사는 지역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계획의 내용 및 수립·변경·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10조의2(지역환경보건위원회) ① 지역의 환경보건 증진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·도지사 소속으로 지역환경보건위원회(이하 “지역위원회”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

② 지역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역계획의 수립과 변경
2. 관할 구역의 환경보건 증진을 위한 시책
3. 관할 구역의 제17조에 따른 건강영향조사 청원의 처리
4. 그 밖에 지역의 환경보건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시·도지사가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

③ 지역위원회의 위원은 환경보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

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·도지사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거나 임명한다.

1. 환경보건 전문가
2. 환경보건 관련 시민단체의 대표자
3. 환경보건 관련 산업계 종사자
4. 소속 공무원
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시·도의 조례로 정한다.

제15조(환경 관련 건강피해의 건강영향조사 등)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 환경유해인자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조사·평가하여야 한다.

1. 어린이, 노인, 임산부 등 환경유해인자의 노출에 민감한 계층
2. 산업단지, 폐광지역, 교통밀집지역 등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영향의 우려가 큰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등 특정 인구집단
3. 미세먼지 등 환경유해인자가 「환경정책기본법」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을 초과하는 등 같은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환경오염이 현저하거나 현저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등 특정 인구집단

② 환경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환경성질환의 발생 또는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가 우려되거나 의심되는 지역 주민 등 특정 인구집단에 대하여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.

③ 환경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·제2항 또는 제17조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제14조제4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료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

④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·제2항 또는 제17조에

따른 조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영향조사반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⑤ 환경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실시하는 제2항 또는 제17조에 따른 조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⑥ 환경유해인자 관련사업자(제1항·제2항 또는 제17조에 따른 조사의 원인이 되는 환경유해인자의 발생과 관련이 있는 사업자를 말한다. 이하 같다)는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·제2항 또는 제17조에 따른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, 그 조사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1.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회피하는 행위
2.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
3.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하거나 은폐하는 행위

⑦ 누구든지(환경유해인자 관련사업자는 제외한다)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·제2항 또는 제17조에 따른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, 그 조사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방해하거나 거짓 진술 또는 고의적으로 사실을 은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17조의2(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) ① 환경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4조, 제15조제1항·제2항 및 제17조에 따른 조사를 마친 때에는 그 결과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.

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에 따라 환경매체와 환경유해인자를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에 따라 관할 구역의 환경매체와 환경유해인자를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책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.

④ 환경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에 따라 환경매체와 환경유해인자를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

관의 장에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관련 대책을 세우고 시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.

⑤ 국가는 제3항에 따른 대책의 수립·이행에 필요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적·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비용추계서 첨부제외 사유서(제11조제4항 관련)

○ 첨부제외 관련규정

- 「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11조제4항제1호

○ 사 유

-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 정비하는 것으로 별도의 비용을 수반하지 않아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함.

○ 작성자

환경산림국 기후대기과장 차 은 녀